

학 생 선 도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규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원칙)

-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징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를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음악부장, 생활지도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③ 생활지도부 교사는 간사가 되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4조 (기능)

선도 대상 학생의 징계 범위에 관한 심의를 한다.

제5조 (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6조 (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 관계교사 및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7조 (재심의 부의)

- ①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및 학부모는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교내 생활지도부 교사는 위원이 아닌 상태로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3장 징계

제9조 (징계의 종류)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훈계 및 벌점
 - (2) 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 (1일 4시간 기준)
 - (3)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 (1일 8시간 기준)
 - (4)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
 - (5) 정학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 (6) 퇴학처분
- ② 징계기간은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10조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훈계 : 훈계는 학생이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였을 때 상·벌점 기록을 남긴 후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 ② 교내봉사 : 교내봉사는 징계 기간 동안 생활지도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는 교내 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선도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사회봉사
 - (1)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며, 학교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사회봉사 기간에 대하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케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공기관 청소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고아원 등)
 - (2) 사회봉사기간동안 학생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제12조 (징계 심의 확정)

-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교내 생활지도부 교사의 진상조사(징계 경위서, 사안발생보고서)와 담임 교사의 의견(구술 또는 의견서)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부장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내용의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4조 (징계 학생 고사 응시)

학교장은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에 응한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징계 기간의 단축)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징계위원회의 재심을 통하여 징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 담임교사의 소견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 지도)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행사¹⁾에 중요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4장 규정의 제·개정

제18조 (규정의 제·개정)

규정의 제·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규정)

1) 학교를 대표하는 행사란 본교 학생이 참가하는 교내외의 행사 중에서 음악부 및 관련 부서의 교사들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학교를 대표한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함.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성별	남 학생	여 학생
교복	1. 바지의 목을 줄여 입지 않는다. 2.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교내에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그 이외의 요일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지정된 생활복을 허용한다.	1. 치마 길이는 무릎 선으로 한다. 2. 치마가 몸에 달라붙도록 줄여 입지 않는다. 3.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교내에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그 이외의 요일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지정된 생활복을 허용한다.
신발 (양말)	1. 학생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조리, 슬리퍼 등은 착용금지)	1. 학생용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한다. (조리, 슬리퍼, 하이힐 등은 착용금지) 2. 성인용 스타킹은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증	1. 연습실 사용 확인 및 신분 증명을 위하여 학생증을 항상 소지한다.	1. 연습실 사용 확인 및 신분 증명을 위하여 학생증을 항상 소지한다.
기타	1.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피어싱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을 금지한다. 2. 핸드폰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 수업 중에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압수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주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3.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1.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피어싱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을 금지한다. 2. 핸드폰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 수업 중에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압수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주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3.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5. 화장 및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 사용을 금지하며 화장품 소지하지 않는다.

제1조 (두발)

- ① 학생의 염색, 파마, 불량스러운 두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기획사 소속 학생의 허락된 행사, 교내의 특별한 행사 및 외부행사 참여를 앞둔 학생은 정식 공문을 통해 학교장의 허락 하에 제외함.)
- ② 남·여학생 모두 아래와 같은 부덕이한 사정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모자를 착용할 경우엔 본교 소정 양식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머리훈터 및 수술
 - (2) 대외적인 문예활동
 - (3) 기타 정당한 사유
- ③ 학생 두발규정은 교사의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와 지속적인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해

여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복장)

- ① 학교에서 정한 교복 및 생활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금요일 : 교복착용 / 이외 요일 : 생활복 허용)
- ② 신발 : 운동화, 단화류의 학생화를 착용하며, 굽이 높은 신발, 조리, 슬리퍼의 착용을 금한다.
- ③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피어싱 등 액세서리의 착용을 금하며,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 (기타) 기타 학교생활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① 화장 및 손/발톱의 매니큐어를 금하며 성인용 화장품 소지할 수 없다.
- ② 핸드폰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 수업 중에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압수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주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 ③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④ 위의 사항 이외에도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 교내 생활 수칙 ※

- ①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② 쉬는 시간 등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학교 외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 ③ 위험한 놀이는 자제합니다.
- ④ 계단 통행 시에는 서로 양보합시다.
- ⑤ 계단에서는 여러 계단을 한꺼번에 뛰거나, 난간에서 장난하지 맙시다.
- ⑥ 창가에서 장난치지 말고 창틀에 걸터앉거나 매달리지 맙시다.
- ⑦ 교실 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장난을 삼갑시다.
- ⑧ 교탁, 출입문, 연습실 벽, 기둥 등을 발로 차지 맙시다.
- ⑨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운동 중에 심한 두통, 어지럼증, 가슴 결림,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무실로 방문합니다.
- ⑩ 교내에 공사 또는 수리 중인 시설이나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갑시다.

※ 교내 음악생활 수칙 ※

- ① 수업시간 전에 교실을 정리하고 악기를 세팅합니다.
- ② 개인악기, 케이블, 건반 페달은 개인이 준비합니다.
- ③ 악기, 책걸상 등 교실 내 기물은 허가 없이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며 관리부 선생님 허락 하에 이동합니다.
- ④ 악기, 음향장비 파손에 주의합니다.
- ⑤ 합주실 및 연습실 사용주의 사항을 따릅니다.
- ⑥ 연습실 출입 시 학생증을 항상 소지합니다.
- ⑦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며, 악기와 장비, 연습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 ⑧ 소지품에 개인 이름과 반 번호를 기입하여 분실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⑨ 빈 공간에 남겨진 개인 소지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기억합니다.
- ⑩ 개인연습실에 2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금하며, 불경건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 ⑪ 연습실 내에 조명을 끄지 않도록 하며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 ⑫ 생활 수칙을 어기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기기(휴대전화 및 mp3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목적)

- ①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
- ②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기기(器機)의 올바른 사용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 ④ 자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 ⑤ 휴대전화 예절 교육을 통하여 정보통신사회에서 건전하고도 예절바른 학생을 육성한다.

제2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방침)

- ① 수업 중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제3조 (규정 위반 시 조치)

- ① 1차 적발 시 벌점을 받은 후 1일 후에 적발한 담당선생님께 찾아간다.
- ② 2차 적발 시 벌점을 받은 후 3일 후에 적발한 담당선생님께 찾아간다.
- ③ 만약 위의 물품들을 소지 및 사용 중 물품이 분실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별지 :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에 관한 징계 기준표>

구 분	항 목	행 위 내 용	징 계						
			서 면 사 과	전 속 · 협 박 · 압 박 · 금 품 지	교 내 봉 사	사 회 봉 사	특 별 교 육 · 심 리 상 담	출 석 정 지	퇴 학 처 분
매 일 · 연 회	1	공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2	공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상습적, 집단적으로 한 경우	○	○	○	○	○	○	
	3	공갈, 협박, 강요 등을 행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	○	○	
	4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협박, 강요 등을 행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	○	○	○
	5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
	6	상습적으로 따돌림을 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
성 폭 · 해 상	7	2주 이내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	○	○	○	
	8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	○	○	○	
	9	다른 학생을 폭행한 경우	○	○	○	○	○	○	
	10	다른 학생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폭행한 경우	○	○	○	○	○	○	○
	11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	○	○	○	○	○	○
	12	집단적으로 폭행한 경우 (집단싸움 포함)	○	○	○	○	○	○	○
성 폭 · 매 일 · 연 회	13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등을 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
	14	상습적으로 성적인 명예훼손, 모욕 등 수치심을 준 경우	○	○	○	○	○	○	○
	15	집단적으로 성적인 명예훼손, 모욕 등 수치심을 준 경우	○	○	○	○	○	○	○
	16	성폭행을 한 경우	○	○	○	○	○	○	○
	17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	○	○	○	○	○	○	○
사 이 버 · 성 폭 · 매 일 · 연 회	18	사이버 상에서 남을 협박,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	○	○	○	○	
	19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남을 협박,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	○	
	20	사이버 상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 해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21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 해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
	22	음란물과 관련된 영상물 등을 사이버 상에 올리거나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	○	○	○	○	○
	23	상습적으로 음란물과 관련된 영상물 등을 사이버 상에 올리거나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	○	○	○	○	○
기 타	1	징계를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동일 징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3	징계를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7.30)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③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 제1항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생의 비행에 대한 사안은 학생선도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내용에 따라 위의 제1항과 동시에 교육이 가능함)
- ③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② 일시 보호 (학교장 인정 시 출석 처리 가능)
-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학급 교체

제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③ 학교에서의 봉사
- ④ 사회 봉사
-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생활 평가 카드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으로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도덕규범의 내재화가 요구된다. 이에 학생생활지도 시 '사랑카드 평가제'를 적용해 통제나 처벌의 수단에서 칭찬과 격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벌점을 누가 기록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지도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성을 주고 준법정신 고양과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고자 한다.

제2조 (추진방향)

- ① 선도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봉사정신을 고취시켜 교칙 등 규범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② 학생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고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교육환경 구축
- ③ 학생들이 '사랑카드 평가제' 운영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사전 지도 철저
- ④ 상·벌점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벌점 부과에 따른 논란 근절
- ⑤ 전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 생활화
- ⑥ 규칙위반에 의한 벌점을 누적시키기보다는 지속적 지도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
- ⑦ 학칙의 '학생선도규정(징계)'과 '사랑카드 평가제'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

제3조 (추진 내용 및 방법)

- ① 사랑카드 평가제는 선행(녹색)카드와 지도(황색)카드로 구분되며 그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가정통신문, 학급 자치회, 홈페이지, 교사 및 학부모연수)
- ② 전 교사가 선행(녹색)카드 및 지도(황색)카드를 항상 소지한다.
- ③ 선행(녹색)카드는 선행행동이나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 부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발급한 후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발급된 선행카드는 지도카드 담당교사가 일괄하도록 한다. 지도(황색)카드를 발급하는 지도교사는 반드시 학생에게 확인시키고 해당 점수를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 ④ 생활지도부 사랑카드 담당교사는 입력된 월별 누계자료를 학급담임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상·벌점을 관리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 ⑤ 학급담임교사는 수시로 사랑카드 관리 프로그램에서 학급 학생의 통계를 확인하고 학생의 면담이나 생활지도에 활용한다.
- ⑥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 교사는 교육상 필요시 학부모를 내교토록 하여 생활 지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벌점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벌점 내용에 관해 통보한 후

‘결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⑧ 상점과 벌점은 한 달을 기준으로 결산 하되 학년 초부터 시작하여 학년말까지 1년 동안 누계 처리 한다.

제4조 (사랑카드 평가 기준)

① 사랑 선행(녹색) 카드

- (1) 학생의 선행에 대하여 선행(녹색) 카드를 발급한 후 사랑카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서식 1>
- (2) 동일 학생의 유사한 선행 행동에 대한 선행(녹색)카드 발급은 1일 1회에 한 한다.
- (3) 선행점수를 부여받은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받은 상점만큼 벌점에서 경감할 수 있다.
- (4) 벌점이 많은 학생은 별도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후 1회 1~2점 정도의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벌점을 상쇄받기 위한 봉사활동 시 확인자는 생활지도부 교사, 각 학년 학년부장, 사랑카드 담당교사로 한다.
- (5) 사랑카드 입력은 사랑카드 담당자만 하며 동일학생이 하루에 여러 번 선행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 선행 및 봉사료 부여하는 경우만 2회 중복 인정하고 그 외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 중 1개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 (6) 선행이나 봉사료 얻은 선행(녹색) 카드로 벌점을 상쇄하고자할 때는 매월 마지막 주를 상쇄 기간으로 정해 카드담당교사가 한 달에 5점까지 상쇄해 줄 수 있다.
- (7) 사랑 선행(녹색)카드 상점 기준

내 용	점 수
1. 학교나 학급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을 때	1점
2. 교내 청소나 학급을 위해 봉사를 했을 때	1점
3. 학교 기물 파손자나 싸움하는 친구를 말리거나 선도했을 때	2점
4. 수업태도가 개선되었을 때	1점
5. 교외 행사나 음악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2점
6. 본교와 관련된 불량 서클이나 불량 사이트를 신고하였을 경우	2점
7.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	1점
8. 왕따 피해 학생을 이끌어 주는 학생	2점
9.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한 학생	1점
10.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2점
11. 수업 분위기나 학급 활동을 바람직하게 선도 했을 때	2점
12. 기타 각 항에 상응하는 선행을 했을 때	1~2점
13. 분실된 교구, 귀중품을 습득 신고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	1점
14. 술선하여 휴지를 자주 줍는 학생	1점
15. 수업에서 교재, 교구, 기자재 관리 및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행동을 한 학생	2점
16. 학습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업보조 도우개로 활용되도록 한 학생	2점
17. 학교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적극 참여한 학생	3점

※ 매 1회 2점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황색)카드

- (1) 경고나 훈계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 사항 적발 시 지도(황색) 카드를 발부하여 지도교사나 담당교사가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기록한다.<서식 1>
- (2) 생활지도부 사랑카드 담당교사는 입력된 벌점을 1년간 누가 기록하고 월별 누계자료를 학급담임에게 통보해 주며 규정에 따라 벌점을 관리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 (3) 벌점이 많은 학생은 별도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1일 1회 1~2점 정도의 벌점을 감할 수 있다.
- (4) 교칙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선도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5) 상·벌점 내용의 추가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 (6) 지도(황색)카드 벌점 기준

지도 내용	위 반 항 목	벌 점	비 고
용의 복장	1. 두발불량(염색, 규정보다 긴머리, 묶은 머리 풀기 등)	1점	학생의 교칙위반 정도에 따라 지도교사가 벌점을 감할 수 있음
	2. 문신 (손, 발)	3점	
	3. 복장위반(반지, 화장, 목걸이, 귀걸이, 교복개조, 화려한 머리핀)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행위.	2점	
	4. 실내·외화위반(규정 이외의 실내화 포함)	1점	
	5. 위생 불량(긴 손톱, 매니큐어 등)	2점	
	6. 위와 상응한 위반행위	2점	
교내·외 생활	7. 복도에서 뛰어다니기	2점	
	8. 교복 미착용, 체육복 미착용	1점	
	9. 쓰레기 무단 투기(껍, 휴지 등), 벽 낙서, 책상 낙서	1점	
	10. 계단에서 장난 및 뛰는 학생	2점	
	11. 급식판으로 장난하는 행위, 급식 질서 위반자	2점	
	12. 다른 반이나 하급생교실 상습적 출입하여 학습 분위기 저해자	2점	
	13. 합주실 및 연주실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생	2점	
	14. 악기,음향 장비 무단사용	2점	
	15. 수업 중 무단외출 (p.c방, 당구장 등)	3점	
	16. 이성간의 풍기 문란 행위, 이성, 동성 간의 성희롱	5점	
	17. 불필요한 물건소지(화장품, 담배, 라이터 등)	5점	
	18. 싸움 및 흡연	10점	
	19. 교사에 불손한(무례한)언행, 지시불이행	5점	
	20. 인터넷이나 핸드폰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점	
	21. 음악악기 기물파손 ,음악자재 분실 등	5점	
	22. 친구 괴롭힘	5점	
	23. 벽지 및 낙서 행위자	3점	
	24. 일과 중 핸드폰 소지 및 사용자	2점	
	25. 위와 상응한 위반행위	1~5점	
수업 태도	26. 핸드폰사용, 소란, 불필요한 이동 등	2점	
	27. 수업태도 불량	1점	
	28. 수업 준비 미비	1점	
	29. 수업시간 늦게 들어오는 행위	2점	
	30. 위와 상응한 위반행위	1~2점	
출결상태	31. 등교 지각(09:00시 기준)하는 경우	1점~2점	
기타	32. 각 항에 유사한 행위 및 이상 선도규정의 훈계를 받은 경우	5점	

제5조 (사랑카드 결과처리)

- ① 선행(녹색) 카드 결과 처리
 - (1) 학급의 모범상, 선행상 추천 시 상점이 상위인자를 선정하여 칭찬과 격려의 기회를 부여한다.
 - (2) 선행이나 봉사로 받은 선행(녹색) 카드 점수로 한 달에 5점 이내의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② 지도(황색) 카드 사후 관리
 - (1) 벌점 누계 2점 : 1차 경고.
 벌점 합계 「10점 이상」- 교내봉사, 「20점 이상」-사회봉사, 「25점 이상」-특별교육이수

《녹색》(지도교사 보관용) 선행 카드	
학년 반 번 이름	
일 시	2012. . . 시 분
항목번호	
부여내용	
지도교사	(인) (인)
학생확인	

《황색》(지도교사 보관용) 지도 카드		
학년 반 번 이름		
일 시	2012. . . 시 분	
위반항목	코드 번호	
벌 점		
지도교사	(인) (인)	
학생확인		

《녹색》 (학생제출용) 선행 카드	
학년 반 번 이름	
일 시	2012. . . 시 분
항목번호	
부여내용	
지도교사	(인) (인)
학생확인	

《황색》 (학생제출용) 지도 카드		
학년 반 번 이름		
일 시	2012. . . 시 분	
위반항목	코드 번호	
벌 점		
지도교사	(인) (인)	
학생확인		

내 용	점 수
1. 학교나 학급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을 때	1점
2. 선생님 지시사항을 열심히 했을 때(1일 1점)	1점
3. 학교 기물 파손자나 싸움하는 친구를 말리거나 선도했을 때	2점
4. 수업태도가 개선되었을 때	1점
5. 교외 행사나 음악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2점
6. 왕따 피해 학생을 이끌어 주는 학생	2점
7.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	1점
8. 왕따 피해 학생을 이끌어 주는 학생	2점
9.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한 학생	1점
10.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2점
11. 수업 분위기가 학급 활동을 바람직하게 선도 했을 때	2점
12. 기타 각 형에 상응하는 선행을 했을 때	1-2점
13. 분실된 교구, 귀중품 습득 신고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	1점
14. 숙선하여 휴지를 자주 주는 학생	1점
15. 음악 교제, 교구, 기자재 관리 및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행동을 한 학생	2점
16. 학습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업보조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 학생	2점
17. 학교 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적극 참여한 학생	3점

※ 매 1회 2점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 내용	위 반 항 목	벌 점
음의 복장	1.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행위	2점
	2. 문신(손, 발)	3점
	3.복장위반(반지,화장,목걸이,귀걸이,교복개조,화려한머리핀)	1점
	4. 실내외화위반(규정 이외의 실내화 포함)	1점
	5. 위생 불량(긴 손톱, 메이크업 등)	2점
	6. 위와 상응한 위반행위	2점
교내 외 생 활	7. 복도에서 뛰어나가기, 실내 공놀이	2점
	8. 교복 미착용- 체육복 미착용	1점
	9. 쓰레기 무단 투기(깡, 휴지 등), 벽 낙서, 책상 낙서	1점
	10. 계단에서 장난 및 뛰는 학생	2점
	11. 급식판으로 장난하는 행위, 급식 질서 위반자	2점
	12. 다른반이나 하급생교실 상습적 출입 학습분위기저해	2점
	13. 합주실 및 연습실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생	2점
	14. 악기, 음향장비 무단사용	2점
	15. 수업 중 무단외출 (p.c방, 당구장 등)	3점
	16. 이성간의 풍기 문란 행위, 이성, 동성 간의 성희롱	5점
수업 태도	17. 불필요한 물건소지 (화장품, 담배, 라이터 등)	5점
	18. 싸움 및 흡연	10점
	19. 교사에 불순한(무례한)언행, 지시불이행	5점
	20. 인터넷이나 핸드폰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점
	21. 음악악기 기물파손 및 음악자체 분실 등	5점
	22. 친구 괴롭힘	5점
	23. 벽지 및 낙서 행위자	3점
	24. 일과 중 핸드폰 소지 및 사용자	2점
	25. 위와 상응한 위반행위	1-5점
	26. 핸드폰사용, 소란, 불필요한 이동 등	2점
휴과악기 기타	27. 수업태도불량	1점
	28. 수업 준비 미비	1점
	29. 수업시간 늦게 들어오는 행위, 무단결석	2점
	30. 위와 상응한 위반행위	1-2점
31. 등교 지각(09:00시 기준)하는 경우	1점	
32. 선도규정의 훈계를 받은 경우	5점	

<서식 2>

생활지도 결과 통지서 (특별교육 동의서)

소 속 : 학년 반 번
성 명 :
별점 합계 : 점 (교육 1일)

이 학생은 학생 기본 생활지도를 하면서 실시 결과 ○월 개인 별점 합계가 위와 같으므로 특별교육교실에 입실시켜 다음과 같이 교육하겠습니다.

- ◇ 교육 일시 :
- ◇ 장 소 :
- ◇ 교육 내용 :

※ 문의 : 생활지도부실 ☎2231-5210 (학부모님 참관 가능)

2012 년 월 일

서울실용음악학교장

-----절취선-----

회 신 서

위 내용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2012 년 월 일

학생 의 부모 (인)

<서식 3>

서 약 서

소 속 : 학년 반 번
성 명 :
별점 합계 : 점

상기 본인은 기본 생활지도를 하면서 실시 결과 ○월 개인 별점 합계가 위와 같으므로 특별교육교실에 입실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교육 일시 :
- ◇ 장 소 :
- ◇ 교육 내용 :

2012 년 월 일

학 생 : (인)
학부모 : (인)